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신설〉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07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신설 ..... | 3  |
| 가. 개정안의 내용 .....                | 3  |
| 나. 검토의견 .....                   | 5  |
| 다. 관계기관 의견 .....                | 10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7.
3. 회 부 일 : 2025. 3. 1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현재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고 있고,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는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소년,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을 의뢰한 소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소년법」에 따른 임시  
조치 위탁 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청소년들이 범죄에 다시 노출  
되는 환경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직업 훈련과 인성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단순한 교정기관을 뛰어

넘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대통령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운영 예산 확보와 교육지원 등 타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필요한 내용 등을 기관·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 III. 검토의견

####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42조의4(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에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  |                                                                               |
|--|-------------------------------------------------------------------------------|
|  | <p>④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br/>·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br/>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br/>으로 정한다.</p> |
|--|-------------------------------------------------------------------------------|

## 나. 검토의견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근거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부적응 학생 등 위기 청소년과 기소유예자 등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임.<sup>1)</sup>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8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법원·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전문교육(대안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법원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조사(교육), 지역사회 청소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79쪽.

년에 대한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일반학교 학생·교사 등에 대한  
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청소년 비행관련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음.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 명칭                     | 위치             | 명칭                         | 위치             |
|------------------------|----------------|----------------------------|----------------|
| 부산소년원<br>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광역시          | 대전소년원<br>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충청남도<br>천안시    |
| 부산소년원<br>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광역시          | 청주소년원<br>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충청북도<br>청주시    |
| 부산소년원<br>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광역시          | 춘천소년원<br>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br>춘천시 |
| 부산소년원<br>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경상남도<br>창원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br>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경기도 안산시        |
| 대구소년원<br>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광역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br>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특별시          |
| 광주소년원<br>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광역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br>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특별시          |
| 광주소년원<br>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라남도<br>순천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br>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광역시          |
| 전주소년원<br>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북특별자치도<br>전주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br>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경기도 수원시        |
| 대전소년원<br>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광역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br>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경기도<br>의정부시    |

- 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센터의 지위를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sup>2)</sup> 등을

2) 참고로 현재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 사업을 통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임차료 등을 편성하고 있고, 현행 직제 규정에 따라 소년원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

확보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수행업무를 고려할 때 그 지위를 기존과 같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으로 하는지, 소년원 등과 동일한 또는 독립적 지위의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격상하는지 불분명하여 조직·업무체계 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법령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법」 등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독립적인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격상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에 관해 기존 「소년법」 등과의 관계 명확화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sup>3)</sup>

또한, 이를 법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sup>4)</sup>

---

특성상 ‘소년원운영인건비(총액)’ 사업에 관련 인건비 등을 편성하고 있음.

3) 예를 들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중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제2항제2호)는 「소년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대안교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운영하는 것임.

4)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

를 고려할 때 그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설치·운영의 위탁(안 제42조의4 제2항)에 관해서는 법원소년부판사가 명한 대안교육을 집행하고 피의자인 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기존의 업무를 위탁 가능한 업무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중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는 「소년법」 제49조의2제1항<sup>5)</sup>에 따라 그 주체가 국가기관(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에 한정되어 있어, 그 업무가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으로 소년법 개정안(한지아

---

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5)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의원안, 의안번호 제4380호)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로, 관련 내용을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등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소년법 개정안(한지아의원안) 안 67조의3 >

| 현행 소년법 | 한지아의원안<br>(의안번호 제4380호)                                                                                                                                                                                                                                                                                              |
|--------|----------------------------------------------------------------------------------------------------------------------------------------------------------------------------------------------------------------------------------------------------------------------------------------------------------------------|
| <신 설>  | <p>제67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p> <p>①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단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정한다.</p> |

## 다. 관계기관의 의견

- 개정안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기관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비행예방센터가 법원, 검찰, 학교장의 상담·교육명령 집행 및 비행 사실 조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므로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필요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직제)로 정하고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 중인 법무부 소속기관이므로 현행과 같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소년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전담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52 |